

# 변경대비표

1. 펀드명 : 하나UBS She&Style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모투자신탁 신설 및 기존펀드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 펀드명 변경
- 자신탁 변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 매매.평가 이익 유보 반영
-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투자신탁 결산에 의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6년 12월 15일

4. 대비표

[ 집합투자계약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칭	하나 UBS She & Style 증권 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She & Style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제2조 (용어의 정의)	제8호 (신설)	<a href="#">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a>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4항 (신설)	<a href="#">6.모자형(자투자신탁)</a> <a href="#">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a> <a href="#">1.하나UBS She &amp; Style 증권 모투자신탁[주식]</a> <a href="#">2. 하나UBSFirst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1호)[주식]</a> (순차적 연번 변경)
	<a href="#">⑤</a>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 href="#">⑤</a>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내지 제4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이 투자신탁은 <a href="#">국내 주식에 주로 투</a>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u>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제 17 조(투자대상 자산 등)</b>	제1항제1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u>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u>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b>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b>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본문, 현행과 동일) 1. <u>제3조 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u> 2. <u>제17조 제2항 각호 방법으로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u>
<b>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b>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일부 삭제	본문 (현행과 동일) 제1호 (현행과 동일) <u>제2호 ~ 제8호 삭제</u>
<b>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b>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 제3항 삭제
<b>제25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b>	(신설)	<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 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u>
<b>제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b>	(신설)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u>

<p><b>환매청구)</b></p>		<p><u>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b>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b></p>	<p>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u>동 의 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 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 의 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u></p>
<p><b>제28조 (환매연기)</b></p>	<p>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p>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u>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 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로 인하여</u>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하 현행과 동일)</p>
<p><b>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b></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하 생략)</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u>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u>)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이하 현행과 동일)</p>
<p><b>제 33 조(이익분배)</b></p>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p>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5일)</u> <u>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 투자재산의 평가이익</u></p>

		<a href="#">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매매이익</a>
<b>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b>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a href="#">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a>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a href="#">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으로</a>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b>제 37 조(수익자총회)</b>	①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법령 <a href="#">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a>
	제 10 항 (신설)	<a href="#">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a> (순차적 연번 변경)
<b>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b>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하 생략)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 <a href="#">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a> )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하 현행과 동일)
<b>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b>	제2항 제5호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제5호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a href="#">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a>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a href="#">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a>

<p><b>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b></p>	<p>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u>투자신탁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u>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b></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u>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u>)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u>간이투자 설명서</u>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u>및 간이투자설명서</u>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u>모투자 신탁의 내용을 포함</u>)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p> <p>⑦ <u>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u></p>

		<p>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 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p>
--	--	---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b>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b> 하나 UBS She & Style 증권투자신탁[주식]	<b>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b> 하나 UBS She & Style 증권자투자신탁[주식]				
	<b>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b> 마. 특수형태 (추가)	<b>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b> 마. 특수형태 - 모자형(자펀드) (모투자신탁이 발행 하는 집합 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 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b>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b> 하나 UBS She & Style 증권투자신탁[주식]	<b>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b> 하나 UBS She & Style 증권자투자신탁[주식]				
	<b>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b>	<b>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업데이트)</b>				
	<b>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b>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b>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b>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다. (신설)	<b>다. 모자형 구조</b> <u>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table border="1" data-bbox="1013 1798 1511 1984">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하나UBS She&amp;Style 증권모투 자신탁[주식]</td> <td rowspan="2">70% 이상</td> </tr> <tr> <td>하나UBSFirst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1호)[주식]</td> </tr> </tbody> </table>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UBS She&Style 증권모투 자신탁[주식]	70% 이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UBS She&Style 증권모투 자신탁[주식]	70% 이상					
하나UBSFirst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1호)[주식]						

	(신설)	<a href="#">[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a> 별첨 1
	<b>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b>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여 (이하 생략)	<b>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b> 이 투자신탁은 <a href="#">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a>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
	<b>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b> 가. 투자대상 (도표삭제)  나. 투자제한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도 등)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이하 생략)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이하 생략)  (신설)	<b>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b> <a href="#">가.자집합투자기구</a> (1)투자대상 별첨 2 (2)투자제한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도) <a href="#">이하 삭제</a>  (3)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a href="#">법제82조제1호</a> (이하 현행과 동일)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a href="#">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a>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a href="#">투자신탁 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a>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a href="#">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a>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이하 현행과 동일)  <a href="#">나.모집합투자기구:</a> 별첨 3
	<b>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b> 가. 투자전략 (신설)	<b>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b> 가. 투자전략 <a href="#">[자집합투자기구]</a> <a href="#">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a>

	<p>(제목신설)</p> <p>(신설)</p> <p>다. 수익구조 (신설)</p> <p>(제목 신설)</p>	<p><u>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u></p> <p><u>[모집합투자기구]</u> <u>하나 UBS She&amp;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u> (현행과 동일) <u>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 (제 1 호)[주식]</u> 별첨 4</p> <p>다. 수익구조 <u>[자집합투자기구]</u> <u>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u></p> <p><u>[모집합투자기구]</u> (현행과 동일)</p>
	<p><b>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b>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하 생략)</p>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b>14.02%</b>임에 따라 <b>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b></li> </ul>	<p><b>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b> ※ 아래의 투자위험은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u>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하 현행과 동일)</p>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b>14.49%</b>임에 따라 <b>6등급 중 3등급에</b></li> </ul>

	<p><u>(다소 높은 위험 수준)</u>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u>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u>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p>
	<p><b>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b>  가. 매입  (신설)</p> <p>나. 환매  (신설)</p>	<p><b>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b>  가. 매입  ※ <u>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u>  <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u></p> <p>나. 환매  ※ <u>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u>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u></p>
	<p>(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하 생략)</p>	<p>(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u>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u> (이하 현행과 동일)</p>
	<p><b>11.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b>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신설)</p>	<p><b>11.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b>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u>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u></p>

		<p><u>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u></p>
	<p><b>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b>  가. 이익배분  (1) (생략)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하 신설)</p> <p>나. 과세  (신설)</p>	<p><b>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b>  가. 이익배분  (1) (현행과 동일)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이익</u></li> <li><u>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u></li> </ol> <p><u>※ 2016년 12월 1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u></p> <p>나. 과세  <b><u>(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 보고기준(CRS)</u></b>  <u>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 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 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u></p>

		<a href="#">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 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a>
<b>제 4 부 집합투자 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b>	<b>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b>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b>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b>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b>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b>	<b>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b>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b>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b>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수익자총회는 법령 <a href="#">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a> 결의할 수 있습니다
	(2)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이하 생략)	(2)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a href="#">한국예탁결제원</a> 에 위탁하여야 하며, <a href="#">한국예탁결제원</a>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이하 현행과 동일)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하 생략)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a href="#">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a>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이하 현행과 동일)
	<b>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b> 가. 의무해지 (생략)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b>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b> 가. 의무해지 (현행과 동일)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a href="#">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a>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a href="#">-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a>

	<p><b>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b></p> <p>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3)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p>	<p><u>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u></p> <p><b>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b></p> <p>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u>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u>)를 작성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 <u>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p> <p>(3)자산보관.관리보고서 (현행과 동일)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u>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u>)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p> <p>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u>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u>)이 발생한 경우</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u>법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u>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p>
--	--	--

	(신설)	<b>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b> 해당사항 없음
--	------	--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칭	하나 UBS She&Style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She&Style 증권 <b>자</b> 투자신탁[주식]								
I. 집합투자 기구의 개요	<p><b>집합투자기구의 특징</b></p> <p>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하 생략)</p> <p><b>분류</b> (신설)</p>	<p><b>집합투자기구의 특징</b></p> <p>이 투자신탁은 <u>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u>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하여 (이하 현행과 동일)</p> <p><b>분류</b> <u>모자형</u></p>								
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	<p><b>[1] 투자전략</b></p> <p><b>1. 투자목적</b></p> <p>(1)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 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으로 하여 (이하 생략)</p> <p>(2) 투자대상 (도표 삭제)</p> <p><b>2. 투자전략</b> (신설)</p>	<p><b>[1] 투자전략</b></p> <p><b>1. 투자목적</b></p> <p>(1)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u>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 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u> (이하 현행과 동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6400; color: white;">투자 대상</th> <th style="background-color: #006400; color: white;">투자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하나UBS She&amp;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u></td> <td style="text-align: center;"><u>70% 이상</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하나UBSFirst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1호)[주식]</u></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유동성 자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 이하</u></td> </tr> </tbody> </table> <p><b>2. 투자전략</b></p> <p><u>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70% 이상 투자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u></p> <p><u>[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u> <u>하나UBS She&amp;Style증권모투자신탁[주식]</u> (기존 운용전략과 동일)</p>	투자 대상	투자 비율	<u>하나UBS She&amp;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u>	<u>70% 이상</u>	<u>하나UBSFirst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1호)[주식]</u>		유동성 자산	<u>10% 이하</u>
투자 대상	투자 비율									
<u>하나UBS She&amp;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u>	<u>70% 이상</u>									
<u>하나UBSFirst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1호)[주식]</u>										
유동성 자산	<u>10% 이하</u>									

	(신설)  <b>3. 운용전문인력</b>	<a href="#">하나UBSFirst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 (제1호)[주식]</a>  별첨4 <b>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b>
<b>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b>	<b>[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b> <b>2. 위험등급</b>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b>14.02%</b> 임에 따라 <b>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b> 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b>[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b> <b>2. 위험등급</b>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a href="#">연율화</a> ))이 <b>14.49%</b> 임에 따라 <b>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b> 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별첨 1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a href="#">하나UBS She&amp;Style 증권모투자신탁 [주식]</a>	<u>주요투자대상</u>	<a href="#">국내주식</a>
	<u>투자목적</u>	<a href="#">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a>
	<u>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u>	<a href="#">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a>
<a href="#">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a>	<u>주요투자대상</u>	<a href="#">국내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a>
	<u>투자목적</u>	<a href="#">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a>
	<u>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u>	<a href="#">-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a>

### 별첨 2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a href="#">하나 UBS She &amp; 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a> <a href="#">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a>	<a href="#">70% 이상</a>	<a href="#">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집합 투자기구</a>
<a href="#">유동성자산</a>	<a href="#">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이내)</a>	- <a href="#">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a> - <a href="#">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a>

기타	<a href="#">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a>
----	--

**별첨 3**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She&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b>1.주식</b>	<b>60% 이상</b>  <b>“여성관련종목”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b>	<p>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p> <p>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하며, 여성관련종목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p> <p>- 주식을 발행한 기업 중 공신력 있는 여성 선호도 조사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여성의 구매력이 우선시되는 업종, 여성 소비자에 대해 우월적인 판매정책을 가진 기업의 주식을 “여성관련종목”라 한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여성관련종목이었으나 이후 새로운 연도에 여성관련종목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 매입된 주식은 여성관련종목으로 볼 수 있다.</p>
<b>2.채권</b>	<b>40% 이하</b>	<p>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p>
<b>3.어음</b>	<b>40% 이하</b>	<p>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p>

4.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p><b>및 환매 조건부매수</b></p>	<p>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b>동일종목 투자</b></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계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p><b>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b></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p>	
<p><b>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b></p>	<p>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p>	
<p><b>파생상품 투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ul>	<p>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p>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적용예외제외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7.집합투자증권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등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계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p>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동일회사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li> <li>-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li> <li>-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li> </ul>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별첨 4**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주식]**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

구분	Style	투자 Horizon	매매 형태	주식 편입비	세부내용
기본 포트폴리오 영역	내재가치 우량주, 성장주 중심	1년	Buy & Hold	주식총액의 70% 수준	-모달(애널리스트)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장기적 성장 잠재력, 해당산업의 Life cycle, 시장지배력, 기업지배구조 등 감안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달성과 주가차별화 양상 감안하며 내재가치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회전율을 가급적 높이고 기본적으로 Buy & Hold의 매매패턴 견지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	경기민감주, 고베타주, 고배당주, 시장테마주 등	중단기 (~6개월)	Short-term Trading	주식총액의 0~30% 수준	-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본적으로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 민감주, 고베타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테마주 등 선택적 대응 등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수익률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하여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